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교류연구단 연구개발기관 3차 재공모 (A9-24-1-05 공동연구개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1차 신규과제중 1개 과제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중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지원내용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1개 연구주제 / 1개 과제 내 3개 내외 공동연구 개발기관 / 9억 내외

[표1] 지원 분야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내역사업)	세부 사업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예정 연구개발 기관 수	지원규모
바이오혁신 기반조성	바이오R&D 성과창출기반조성	A9-24-1-05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 (교류연구단)	3개 내외	'24년 9억원 내외 총 2년

* 바이오혁신기반조성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는 3책 5공 적용 예외에 해당함(근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3호, 4호)

※ 본 3차 재공모에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3개 내외(기관별 지원 정부출연금 '24년 3억원 내외) 선정할 계획임

[표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단위 : 억원)

연구주제 번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A9-24-1-05	2024.8.1.~ 2024.12.31. (5개월)	30	2025.1.1.~ 2025.12.31. (12개월)	40	-	-	-	-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1. 과제 제안요구서] 확인 요망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개요

지원분야 : 첨단바이오(12대 국가전략기술) 세부중점기술* 및 기타 유망 바이오 기술

*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지원내용 : 국내 연구단의 해외 선도 연구그룹 파견(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원규모 : 연 60명* 내외 / 연 40억 원 이내(1차년도 연 30억 원 이내)

* 선도연구자(교수급) 10명 내외, 유망연구자(석·박사 학위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 등) 50명 내외로 구분

지원단위 : 교류연구단(공동연구개발기관)

※ 총 10개 내외 선정 예정 (7개 교류연구단 기선정하였고, 본 3차 재공모에서는 3개 내외 교류연구단 선정 예정)

교류연구단 지원기간 : 2년

※ 1차년도의 경우 선정·파견 기간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서 선정하고, 3차년도부터 전담 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지원센터’)에서 선정할 예정

※ 교류연구단 신청 시 2년간의(1차년도 : '24년~'25년) 연구(파견)계획을 제출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기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의 경우 교류연구단은 선정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나, 전담조직(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교류연구단이 선정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소속으로 편입될 예정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5.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세부 내용

□ 교류연구단 구성 방안

- 연구단장 1명(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6명 내외로 구성
 - ※ (연구단장 지원자격) 국내에서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총괄·관리가 가능한 책임급 연구자
- 참여연구원은 ①선도연구자(교수급) 1명 이내, ②유망연구자(석·박사 학위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
 - 참여연구원은 파견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내), 장기(1년 내)로 구분하며, 교류연구단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참여연구원은 각각 다른 해외 연구기관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교류연구단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유망연구자의 경우 3개 이상의 지원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2명 내로 하여 교류연구단별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 ①합성생물학, ②감염병 백신·치료, ③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④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및 ⑤기타 유망분야
 - 참여연구원은 연구단장과 동일 기관 소속의 연구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기관 소속 유망연구자 최대 2명 포함 가능

< 사례별(유망연구자 소속 및 분야) 교류연구단 구성 가능 여부 >

지원 분야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첨단 바이오	합성생물학	A기관 1명	A기관 2명	-	-	A기관 2명
	감염병 백신·치료	A기관 1명	-	A기관 1명	B기관 1명	B기관 1명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A기관 1명	A기관 1명	A기관 1명 B기관 1명	A기관 2명	C기관 1명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A기관 1명	A기관 2명	C기관 1명	-	-
	기타 유망분야	A기관 1명	-	A기관 1명	C기관 2명	D기관 1명
사례별 구성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 선도연구자(A기관 소속)의 경우 유망연구자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교류연구단 지원 규모

- 교류연구단 당 연간 총 4억 원 내로 지원(1차년도 총 3억 원 내)
 - 1명당 연간 최대 0.6/0.9억 원(선도연구자/유망연구자)내로 교류연구단에서 파견 기간, 파견 지역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
 - ※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 준수 필수

□ 교류연구단 역할

- (연구단장) 국내에서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총괄·관리
 -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선발·구성 및 기술·인력 교류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계획수립
 - ※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공동연구 계획 및 자율성과지표 필수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작성
 - ※ (협력확인서 주요내용)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공간 확보, 매칭펀드(해당시), 연구성과 배분 방안 등
 - 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 (참여연구원) 공동연구 수행, 해외 연구 동향 파악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선도연구자) 파견 종료 후 1년 이내 해당 분야 SCIE급 논문*((공동)제1저자, (공동)교신저자) 1건 이상 작성, 파견 기간 종료 후 파견 연구기관과 향후 지속적인 교류 계획수립 및 상호협력에 대한 협력문서 작성
 - * 해외 파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공동)제1저자, (공동)교신저자 필수 포함, JCR 상위 10% 이내 논문 작성 권장
 - (유망연구자) 파견 종료 후 1년 이내 해당 분야 SCIE급 논문*(공동 저자 포함) 1건 이상 작성 권장, 파견 기간 수행한 공동연구와 연계하여 향후 연구 계획 (로드맵) 작성 및 해당 분야 최신 연구동향 보고서 작성
 - * 해외 파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저자 필수 포함

□ 특기 사항

- 교류연구단은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전담조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파견인력 관리, 성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전담조직(“(가칭) 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지원센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 양성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접비 비율을 10%로 제한함.
-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동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추후 해외파견형 재지원 불가
 - 단, 유망연구자 단기 파견(6개월 내)의 경우, 파견 기간 수행한 연구 주제로 동일한 해외 연구기관으로 한 차례 단기 파견 재지원 가능

6. 신청 및 평가

※ 1차년도는 전문기관에서 공고·접수·평가·선정을 진행하며, 3차년도 이후 전담조직('가칭)첨단 바이오 글로벌 교류 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

□ 공고기간 : '24.7.2.(화) ~ '24.7.18.(목)

□ 접수기간 : '24.7.2.(화) ~ '24.7.18.(목)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우)34113

○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참조 : 차세대바이오단장)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① [인쇄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 협력확인서 전문, 자격 증빙 서류 ② [USB] 인쇄본 파일 일체

※ 인쇄본과 USB자료가 상이할 경우 인쇄본을 우선으로 하여 평가함

○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3차 재공모 (A9-24-1-05 공동 연구개발기관)'에 따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 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로 작성 가능

○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전문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전문은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Letter, MOU 등 제출

- 영문 또는 타 국가 언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유망연구자의 경우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추가 제출

- 유망연구자 성명, 파견 해외기관, 파견 기간, 지도교수 성명, 소속기관, 소속 부서, 직위, 해외 파견 기간 연구 지도 계획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 등 작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지도교수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문서 제출

○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 최초 공고일('24.1.16.(화))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교류연구단 지원 시 제출서류 목록 >

제출 서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붙임2](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서류) 중 첨부1 작성 후 제출
2. 별첨자료	별첨자료 제출 내역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문서 제출
3. 협력확인서 전문 및 번역본 (해외 연구기관의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Letter, MOU 등)	각 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제출 필수 (별도 양식 없음)
4.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유망연구자 필수 제출 (별도 양식 없음)
5. 자격 증빙 서류(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참여연구원 필수 제출

※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제출서류 포함) 일괄 제출

< USB 제출 파일 목록 >

폴더명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소속, 연구책임자명)
파일명	1. 연구개발계획서
	2. 별첨자료(개별 폴더 생성 및 취합)
	3. 협력확인서 전문 및 번역본
	4.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5. 자격 증빙 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선정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동일 기관이 교류연구단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으로 편입되거나 기존 교류연구단의 참여연구원으로 편입될 예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주대학교 / 기선정 공동연구개발기관 :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해당시 필수) 등 필수 작성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과제 제안요구서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구성 형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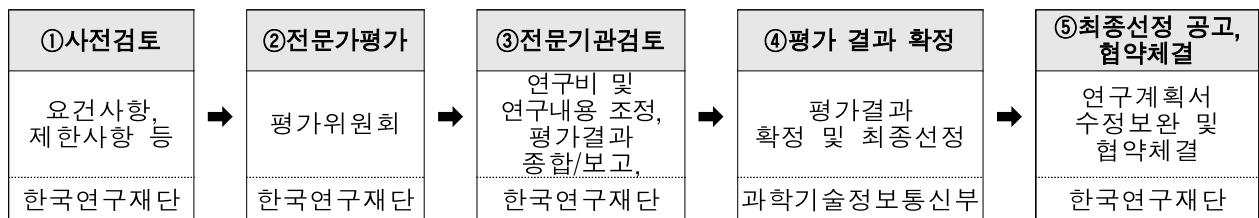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온라인 평가 방식 활용
 - 과제 규모 및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신청자에게 평가방식 별도 안내
-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평가절차



□ 선정평가

○ 기본방향

- 해외 파견 대상 연구기관의 역량, 공동연구 계획의 우수성 및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 평가를 통해 우수 교류연구단 선정

○ 평가지표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내용 평가 (3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 파견연구의 필요성 	15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교류인력 파견계획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15
연구 수행계획 및 실현가능성 (40)	과제수행 역량 및 지원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원의 과제 수행 역량(연구역량 등) 교류연구단의 관리 역량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원 의지 	20
	해외 연구기관 역량 및 협력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 이력,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외 연구기관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의지 	20
연구성과 확산 및 기대효과 (30)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 기간 중 및 파견종료 이후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15
	연구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달성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해외 파견 연구 결과의 국내 연계 가능성 및 연구자의 역량 성장 가능성 	15
합 계			10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타사항

- 그 외에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중복성 검토, 유의사항,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신청과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제1차 공고문에 따라 진행
- 교류연구단 선정 후에 해외 연구기관과 구체적인 교류 계획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추가 제출 요청 가능

8. 기타사항

□ (해당시) 연구과제 상세계획 실시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 이상 과제는, PM과 연구자 간 상세계획을 통해 연구계획 보완·개선
 - 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연계되며,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 ◇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보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 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DMP에 따른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별첨2-13. 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 단, ‘뇌과학 선도융합기술사업’은 해당 시 ‘별첨2-13’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 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 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9. 향후 일정

일 정	내 용
2024. 7월 말	선정평가 실시
2024. 8월	선정결과 공고
2024. 8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10.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2024년도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적용

11.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 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문의처

연구주제번호	부서	연락처	이메일
A9-24-1-05	차세대바이오단	042-869-7720	nrfbio2@nrf.re.kr

- [첨부] 1. [A9-24-1-05]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서류 등